

인권정보자료실
CPb1.4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02. 10. 15 (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02. 10. 15 (화)

대통령소속 의문사

인권정보자료실
CPb1.48
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02. 10. 15 (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目次

I.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1

II. 진상규명 성과25

III.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129

IV. 권 고141

한국유형유산조사사업의
시도보 공표

(호) 21 01 2005

한국유형유산조사사업의 손소행령

大 目

I. 宗旨 本會 宗旨 第一

II. 組織 本會 組織 第二

III. 代辦 本會 代辦 第三

IV. 附則 第五

I.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I.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1. 위원회 설립 의의

- 가.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전개와 입법과정
- 나. 국민의 정부 인권정책과 의문사진상규명의 의의

2. 주요활동 경과

- 가. 위원회의 구성
- 나. 조사 착수와 대국민 홍보활동
- 다. 1·2차 법개정
- 라. 사건조사 경과
- 마. 위원회 결정 및 후속조치

1. 위원회의 설립 의의

가.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전개와 입법과정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애초에는 유가족 개인의 의혹해소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규명요구는 대체로 묵살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공식발표만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 사건은 개별 사건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정부수립 이후 많은 의문사 사건이 있었지만 특히 권위주의 통치로 비롯된 의문의 죽음은 유신시대와 5공화국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문사 사건은 재야인사, 민주화운동가,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대학생 군입대자, 노동운동관련자 등 주로 독재 통치에 반대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은 사건 발생시기에는 그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었으나, 1987년 6·10 민주항쟁 직후 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힘입어 의문사 진상규명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발효된 시점까지 유족들과 관련 단체는 집회, 농성, 청원 등의 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진상규명 노력을 보다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하였고(1987.8), 이후 군대내 의문사사건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88. 10), 의문사유가족협의회(1988.10)를 조직하였다. 유가족단체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운동에 의해 1989년 국회 <제5공화국의 정치권력형비리 특별위원회>에서 의문사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한편 1992년 3월에는 전국 27개 추모단체가 모여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연대회의(추모연대)가 구성되었다. 추모연대가 구성됨으로써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은 다양한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94년 11월 4일 국회의원과 시민 10만여 명이 서명한 의문사 전면 재조사 요구와 국회내 의문사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추모연대와 유가족 단체는 1997년 말부터 의문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였다. '이제는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금요집회 등 대국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8년 10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에 힘을 얻은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제정을 보다 강도높게 촉구하기 위해 1998년 11월 4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 무려 422일 동안 특별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유족단체와 진상규명추진 단체는 정치권의 관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국회앞 외에도 정부청사, 정당당사 또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집회와 농성을 전개하였다.

드디어 1999년 7월 7일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법무부, 관련단체, 여야 정당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같은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족들도 12월 30일 해단식을 갖고 국회 앞 농성을 풀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진정 또는 직권을 통해 의문사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여 조

사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의뢰한다는 것이었다. 그 골자는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민간단체에서 성안한 의문사진상규명법안의 내용에 담겨 있었다.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의문사로 인정되는 사건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의문사사건 조사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1969년 삼선개헌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유족들과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규명요구에 따른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제정과정도 지난했던 만큼 조사기한이나 조사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를 구성한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은 물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의 구성은 차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중요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나. 국민의 정부 인권정책과 의문사진상규명의 의의

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로 비롯된 국민의 피해를 규명하고, 보상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 민주·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국민의 정부의 인권정책의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은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의문사 유가족의 계속된 진상규명 요청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유족들과 관련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만큼 인권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역대정부의 인권정책사에서도 획기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정부수립 직후 만들어진 친일파 반민족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4·19 직후의 반민주행위자조사위원회 등에 비견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과거청산이 시도된 몇 안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책임지고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조사한 의문사 사건은 각 개별사건이 모두 권위주의 통치기에 국민에게 가해진 폭력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 등 정보·수사기관의 과잉·공작수사과정에서 사망했거나, 군에 강제로 징집된 민주화운동 관련 대학생들 소위 특별정훈교육(녹화사업) 및 역이용 프락치공작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그리

고 삼청교육대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중 사망한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가 비도덕적·반인권적이라는 증거이다. 또한 허위 근사건의 경우처럼 군기문란이 빚은 총기사고에 의한 병사의 사망이 십수년동안 복무염증으로 비롯된 자살로 은폐되어 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도덕성 상실을 보여주는 뼈아픈 과거이다. 의문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은 공통적으로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의문사규명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첫째, 진상규명 및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의 처리 둘째, 국가제도의 개선 셋째, 국민의 화합에 있다. 의문사 사건의 처리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간접적 피해의 보상 및 가해자 사법처리 등 응분의 사후조치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권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권위주의 통치에 관한 과거 청산 및 의문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의문사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 대부분은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한 것이거나 제도의 미비나 직무의 유기 등으로 야기된 불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는 당연히 의문사 사건 어느 하나라도 근본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문사사건은 개별적으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이며, 각 사건의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개별사건 결정내용에 상관 없이 과거에 대하

여 국가가 반성하고 부족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조사한 83개 사건은 전체 의문사사건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권한과 자료의 부재 등으로 조사불능된 사건은 물론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도 향후 지속적인 의문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시법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한 제한된 권한과 범위에서 규명작업이 이루어진만큼 의문사 사건은 죽음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조사는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의 종결이 아니며 그 출발점인 것이다.

의문사의 개별사건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의문사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청산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청산은 다음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과거의 청산이다. 이는 의문사사건을 발생시킨 정치사회적 억압의 과거사를 전면 재정리하여 그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제도적 개선이다. 즉 과거청산을 토대로 하여 또다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약 2년간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위원회의 활동은 의문사 사건에 관한 역사적 청산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주요활동 경과

가. 위원회의 구성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국회 의결 및 2000년 1월 11일 대통령 서명 후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서무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위원회 구성을 주관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월 25일 행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시행령 제정 등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하였다. 시행령은 유가족협의회·민변 등 재야 법조계의 자문과 법무부·계승연대와의 논의를 거쳐 성안되었고 2000년 7월 10일 공포되었다.

위원 내정자 9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0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10월 17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위원들은 바로 당일 현판식을 갖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과 1국 5과 10팀으로 짜여진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5개과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 관련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1과, 경찰 관련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2과, 군 관련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3과,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과, 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를 조정하고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행정과로 구성되었다. 출범 당시 위원회 직원은 자체정원 23명, 전문위원 30명, 부처 파견 25명 등 총 78명이었다.

<표-1> 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

성명	직 위	경 력	비 고
양승규 (梁承圭)	위원장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	'02. 3. 20. 사임
김형태 (金亨泰)	상임위원	변호사	'02. 3. 20. 사임
문덕형 (文德炯)	상임위원	전남도청 기획관리 실장	'02. 8. 3. 사임
이석영 (李碩榮)	위원(비상임)	전북대 농화학과 교수	
안병욱 (安秉旭)	위원(비상임)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박은정 (朴恩正)	위원(비상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윤성 (李允聖)	위원(비상임)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원영 (李源榮)	위원(비상임)	변호사	
백승헌 (白承憲)	위원(비상임)	변호사	

12월 1일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원로급 인사 8명으로 운영분과 위원회를, 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계 전문가 13명으로 지원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조사개시와 함께 2001년 2월 7일에는 조사업무를 지원할 조사기획반을 신설하고, 부처 파견 인원을 증원하고 일용직도 채용하여 직원수를 97명으로 증원하였다. 일정하게 조사가 진척됨에 따라 9월 20일에는 조사기획반을 폐지하는 대신 위원장 직속으로 법무팀을 신설했다.

나. 조사 착수와 대국민 홍보활동

출범 직후,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신문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접수를 공고하고 10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 진정을 접수했다. 접수된 80건의 진정 내용을 기초조사를 통해 검토한 후 2건을 각하하는 한편, 삼청교육대, 인혁당사건·옥사사건·행방불명 사건 등 5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하여 총 83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접수 공고에 이어 사무국 홍보팀은 위원회소개 리플렛을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문사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면서 홍보의 역점을 위원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아울러 제보 및 양심선언을 도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두었다. 그리하여 우선 국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 출입기자들을 1차적인 대 언론창구로 삼아 보도 자료 배포·기자간담회·정례브리핑·기자회견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언론사의 기획기사 취재와 TV의 기획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요원들의 기자 인터뷰를 주선하였다.

2001년 4월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일제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전광판·라디오·케이블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와

팸플렛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서울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달기, 반상회 회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화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녀 주연 배우(송강호·이영애)를 명예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 위원회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1·2차 법개정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이 된 2001년 5월 1일 현재 참고인 및 사건 관련자 1,216명을 소환 조사하고, 349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지만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한 83건 중 단순변사로 종결되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2건 이외에 전체의 절반 정도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처리 완료하는 데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한편으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사권한의 강화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1차 법개정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게 위원회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한편 허위 증언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반인륜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을 원용하여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에 포함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정치권이 호응하여, 2001년 6월 19일 이종걸(민주당)의원 외 의원 105명의 이름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을 거친 법안이 6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허위 증언자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처벌권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표-2> 1차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3회에 한해 1회당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및 절차
- 고발 및 수사외 사건 중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주체를 정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정인에게 재정신청권 부여
- 보고서 발간

1차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아질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위원회의 조사 기조 및 방식에 대한 의구심과 법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시간이 지

나면서 거세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2월 17일 유가족들이 위원장 퇴진·조사 기간연장 및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조사의 조기종결 시정 및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실에서 1주일간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한 동안의 내부진통 끝에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계승연대와 유가족 비상대책위는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문사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 대신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정권의 탄압과정에서 발생한'으로 하여 의문사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 여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참고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구인 및 통화내역 감청·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기한도 기존 4월에서 9월 16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증언·진술의 청취를 위한 청문회 개최,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허위 진술 및 감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벌칙부과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창복(민주당)의원 등 67명에 의해 2002년 2월 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2월 21일 "의문사의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조사권한은 법무부가 각각 반대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는 위헌 시비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가족과 여론 등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8일 조사기간을 9월 16일까지 연장하고 명백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기각조치 외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다는 추가 조항만을 담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1월 15일에는 양승규 위원장과 김형태 상임위원이 유가족단체와의 마찰과 위원회가 파행 운영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여 3월 20일자로 사표가 수리되고 한상범 교수와 김준곤 변호사가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으로 내정되어 3월 24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 4월 9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월 18일 새로운 상임위원단이 구성되었다.

<표-3> 후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성명	직위	경력
한상범 (韓相範)	위원장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김준곤 (金浚坤)	상임위원	변호사

라. 사건조사 경과

위원회는 진상을 규명하기로 결정한 83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

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을 피진정기관 및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장준하 사건 등 12건을 조사1과에, 김준배 사건 등 28건을 조사2과에, 허원근 사건 등 28건을 조사3과에, 박영두 사건 등 15건을 특별조사과에 배당했다.

각 조사과는 배당 받은 사건에 대한 진정한 조사·자료협조 요청 및 수집·참고인 선정·현장답사·진정인측 참고인 조사·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 같은 조사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취하 종결된 1건 외에 위원회가 조사해온 사건 82건 중 36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46건도 대부분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반 기록조차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 중요 참고인들의 기억이 불충분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02년 9월 16일 현재 각 조사과에서 조사한 참고인은 총 6,536이었다.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경우는 진정인측 256명, 순정 참고인 3,056명, 피진정인측 775명이었고, 조사관이 출장하여 조사한 참고인은 1,526명, 탐문조사한 참고인은 923명이었다.

참고인 조사·실지조사·자료수집·탐문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관 연인원 4,384명이 2,164회에 걸쳐 출장한 거리가 384,254km에 달했다. 3,126건에 대해 자료협조 요청을 했고, 8,647건에 대해 주민조회 요청을 하기도 했다.

<표-4> 참고인 등 조사현황

	출석요구 내역				출석내역				미출석내역				조사관 출장 참고인 조사 (B)	A+B
	계	진정인	순 참고인	피진정인	계(A)	진정인	순 참고인	피진정인	계	진정인	순 참고인	피진정인		
계	4,603	257	3,537	809	4,087	256	3,056	775	516	1	481	34	1,526	5,613
1과	545	38	436	71	516	38	415	63	29		21	8	233	749
2과	910	59	763	88	778	59	646	73	132		117	15	748	1,526
3과	1,979	108	1,861	10	1,638	108	1,525	5	341		336	5	319	1,957
특조	1,169	52	477	640	1,155	51	470	634	14	1	7	6	226	1,381

<표-5> 조사관련 출장현황

	계		참고인 조사		실지조사		자료수집		담문조사		출장거리 (km)
	회/일	인원	회/일	인원	회/일	인원	회/일	인원	회/일	인원	
계	2,164/3,248	4,383	893/1,439	1,526	171/258	561	685/837	1,373	415/714	923	384,254
1과	315/ 459	987	180/267	233	35/57	181	96/125	235	4/10	338	123,382
2과	741/ 1,044	1,353	383/658	748	59/71	149	125/152	231	174/163	225	97,680
3과	682/ 1,228	1,073	221/354	319	52/97	171	239/324	420	170/453	163	100,471
특조	426/ 517	970	109/160	226	25/33	60	225/236	487	67/88	197	62,721

<표-6> 기타 조사관련 현황

사 건 명	조사인원 (연인원)	자료요구협조		관련기관방문 (회/건)
		자료협조(회/건)	주민조회(회/건)	
계	30,909	1,807 / 3,126	1,210 / 8,647	735 / 684
조사 1과	5,826	317 / 584	214 / 1,223	122 / 147
조사 2과	8,515	638 / 1,407	363 / 3,164	150 / 156
조사 3과	14,670	249 / 445	440 / 3,475	112 / 128
특 조 과	1,898	643 / 735	238 / 1,064	375 / 277

또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이 조사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각 사건의 조사과정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일본·스코틀랜드·남아프리카 등지의 저명한 해외 법의학자들에게 부검자료 등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노용면·노여수 박사가, 일본에서는 독교(獨協) 의과대학의 카미야마 시게타로(上山滋太郎) 박사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글라스고우 대학의 바네지스(Vanezis) 박사가, 남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의과대학의 모아(Moar) 교수가 총 20건에 대한 재감정에 참여했다. 최종길·박필호·남현진·김용권·최우혁·이이동 사건은 3곳에서, 허원근·정성희·한희철·이윤성·김두황·노철승·정도준 사건은 2곳에서 재감정을 하도록 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조사대상사건에서 상당수는 피진정기관이 군사독재 시절의 특수 비밀기관이나 공안기관들이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관이 접근조차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다. 의문사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 '확인불가'로 답변하는 비율이 국정원 38.5%, 기무사 26.7%, 검찰 1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를 조사할 때 피진정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8월 7일에는 김준곤 상임위원 등 위원 4명과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하여 장준하 사건 등 12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8월 14일에 실시된 국방부 실지조사에

서는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등 40여 건의 강제징집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직후인 8월 21일에 실시된 기무사 실지조사에서는 기무사가 "녹화사업 관련자료는 1992년에 모두 폐기했고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며 실지조사에 관한 협조를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간동안 11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명령에 응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현지(방문)조사 2건, 국회 회기중이라 명령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표-7> 동행명령장 발부현황

관련사건	발부대상자	결정일	집행일	비 고
박영두(제81호)	김○○	'01. 3. 24	'01. 4. 6	동행명령 거부
김준배(제22호)	정○○	'01. 9. 1	'01. 9. 5	동행명령 거부
최석기(제56호)	조○○	'02. 5. 24	'02. 5. 24	동행명령 거부
허원근(제32호)	이○○	'02. 6. 24	'02. 7. 4	현지조사 실시
문용섭(제26호)	명○○	'02. 7. 26	'02. 7. 26	동행명령 거부
정경식(제 6호)	최○○	'02. 8. 3	'02. 8. 12	동행명령 거부
녹화사업 관련	전○○	'02. 8. 24	'02. 9. 4	동행명령 거부
	노○○	"	"	"
	이○○	"	'02. 9. 12	현지조사 실시
	서○○	"	'02. 9. 13	국회 회기중
한영현(제49호)	이○○	'02. 8. 31	'02. 9. 13	위원회출두,조사

동행명령 거부에 대하여 위원회가 할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자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8> 과태료 부과 현황

사건명	대상자	부과금액	부과일	납부기간	비고
최석기	조○○	1,000만원	'02. 7. 4	'02. 7. 24	이의제기('02. 7. 6) 법원통지('02. 7. 22)
김준배	정○○	700만원	'02. 7. 4	'02. 7. 24	이의제기('02. 8. 1) 법원통지('02. 8. 5)
문용섭	명○○	1,000만원			
정경식	최○○	800만원			
녹화사업	전○○	1,000만원			
"	노○○	700만원			
"	서○○	1,000만원			

마. 위원회 결정 및 후속조치

위원회는 법정조사활동 마감날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 중 19건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에서 33건은 기각 처리했고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한 사건도 30건에 달한다. 박영두·최종길 사건 등 19개의 인정사건 중 다른 절차로 보상이 시행된 1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

정이며, 김준배 사건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표-9> 기관별 관련사건 결정 현황

구분	계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불특정
계	83	10	3	29	27	7	7
인정	19	2	1	8	5	3	-
기각	33	3	1	10	13	4	2
불능	30	5	1	10	9	-	5
취하	1			1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영두 사건의 안중근 등 조사에 특별히 협조해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표-10> 보상금 지급 결정현황

사건명	대상자	지급결정일	지급금액	지급일	
제81호	박영두	안○○	'02. 7. 21	300만원	'02. 9. 12
제22호	김준배	신○○·전○○	'02. 8. 3	각 300만원	
제32호	허원근	전○○	'02. 10. 5	3,000만원	
		이○○		1,000만원	

<표-11> 사건별 결정 내용

계	기각	불능	인정	각하	기타	
계	83(2) 40%	33	30	19	(2) 1	
조사1과	12	3 김제강, 이수영, 김석조	6 정은복, 양상석, 박창수, 이철규, 장준하, 이내창	3 최종길, 김창수, 장석구		
조사2과	28(2)	11 고정희, 김상원, 문영수, 박현강, 심재환, 우수열, 정인택, 장중훈, 박인순, 최봉대, 이재문	9 문승필, 이재호, 김용갑, 우종원, 김성수, 이승룡, 임태남, 신호수, 정경식	7 김준배, 오범근, 정법영, 이덕인, 박동학, 문용섭, 박태조	(2) 황선철, 정종인	1 배중손 (취하)
조사3과	28	14 송종호, 김영환, 우인수, 노철승, 박필호, 정연관, 박상구, 박종근, 이이동, 허원근, 이재근, 김소진, 이진래, 정도준	9 김용권, 박성은, 이승삼, 최우혁, 임용준, 이창돈, 최은순, 남현진, 최은순, 김두황	5 임기윤, 한희철, 한영현, 이윤성, 정성희		
특조과	15	5 신영수, 김진홍,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6 탁은주, 심오석, 권두영, 박태순, 노진수, 안치웅	4 박영두, 전정배, 변형만, 김용성		

Handwritten note: 02.10.12

II. 진상규명 성과

II. 진상규명 성과

1. 의문사 발생 원인

- 가. 정보·수사기관의 불법적 감시 및 수사관행
- 나. 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다. 군대의 과도한 폐쇄성
- 라.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전향공작
- 마. 삼청교육대
- 바. 무리한 공무집행
- 사. 사적 폭력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묵인 및 방조
- 아. 변사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 자.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

2. 조사 결과

< 개별사건 조사결과표 >

1. 의문사 발생 원인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통치의 반인권적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문사의 배경에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놓여있다. 국가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의문사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첫째, 국가공권력이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권보위 등 부당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둘째,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감시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구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 조작하였으며 셋째, 이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신뢰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동의와 합법적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군사독재 정권은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정보수사 기구를 계속 확대시켰다.

이에 반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런 불균형 속에서 인권침해의 사례는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 특권적 권력기관들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 쉽게 진상을 감출 수 있었다.

실제 의문사 사건들은 국가기관의 생명권 침해와 은폐조작, 의무와 책임 방기, 신뢰상실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문사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가. 정보·수사기관의 불법적 감시 및 수사관행

(1) 고문과 가혹행위

의문사의 전형적인 사례는 경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 등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신체제나 5공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보기관들은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정치적 위기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된 시민들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를 1973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가혹하게 고문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다. 고문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최교수는 결국 10월 19일 고문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및 검찰 등은 최교수가 간첩단의 일원으로 자살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또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장석구는, 1974년 6월 중앙정보부의 조사 후 열악한 구치소 수감환경 속에서 장석구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구치소측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결국, 1975년 10월 15일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살인적인 고문이 장석구에게도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고 집권한 '신군부' 세력 또한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고 고문하는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광주민주화 운동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관련자들 체포되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1980년 광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소환하여 구금 조사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부산 지역의 기독교 인권운동과 반유신운동을 이끌었던 임기윤 목사는 1980년 7월 21일 조사과정에서 무리한 조사와 인격적인 모욕 등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으로서 적극 참여하였다가 1980년 6월 고향에서 체포된 박태조는 경찰서, 육군 전투교육사령부 헌병대 등의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광주교도소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박태조는 그 후유증으로 석방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석방 후에도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박태조는 결국 고문 후유증과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인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987년 11월 목숨을 잃었다.

(2) 기타 불법적 감시와 수사관행

반정부 성향을 지닌 시민을 감시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감시와 수사관행에 의해 의문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재야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준하는 당시 정보기관들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무력화 하기 위한 공작도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조사권한 또한 미비하여 공권력의 직접적 개입여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 유신체제하에서 늘 감시당하고 있던 장준하의 돌연하고도 납득되지 않는 죽음에 국가권력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불법적인 수사관행의 사례는 최근까지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찰과 정보기관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수배자를 체포하는데 이른바 '프락치'를 활용하는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올리는 데만 몰두하여 피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이 결국 한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김준배 사건이다. 1997년 9월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 중이던 김준배를 검거하기 위해 이른바 '프락치'를 활용한 검거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안전장치도 없이 검거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김준배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줄을 타고 탈출하다 추락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아파트 밑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이 추락한 김준배를 덮쳐 폭행한 것이 사망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최소한의 응급조치조차 실시하지 않아 구급차조차 아파트 주민들이 불러야 했다.

위위회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들이 불법적인 공작수사 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1986년 6월 전라남도 여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신호수의 경우,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소위 '장흥공작'이라는 공작수사와 관계되어 신호수가 연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86년 발생한 김상원 사건의 경우도 경찰의 연행과 수사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사례였다.

나. 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5공정권'은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군조직을 정권의 사적 이익 수호를 위해 활용하였다. 군 정보기관은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학생과 노동자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하였다. 또한 5공정권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자행하였다.

5공정권은 학적변동을 명목으로 민주화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입영시켰다. 학생들이 입대하면, 해당 부대에서는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게 하였고, 보안부대와 협조 하에 사상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특수하게 학적변동된 학생에 대한 '특별정훈교육(녹화사업)'을 시행하였다.

각급 보안부대와 보안사 분실등에서는 강제징집된 병사들을 상대로 운동권 활동에 관한 광범한 수사를 하였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연행, 감금, 수사를 하며, 정보 제공을 강요하였다. 한편 젊은 병사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속에서 강압적인 정신교육과 고문 및 가혹행위로 프락치 활동을 종용받았다.

1983년 4월 강제징집된 한영현은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장기간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운동권에 대한 정보제공과 프락치 활동을 요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안부대의 강압에 못이긴 한영현은 불가피하게 동료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로 인한 좌절감과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프락치로 활동해야 한다는 절망감 속에서 끝내 죽음을 선택하고자 만 것으로 밝혀졌다.

1982년 11월 성균관대 학생 이윤성은 법적으로 현역 입영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강제징집당한 사례이다. 이윤성은 수 차례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학생운동권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요당하면서 시달림을 당하던 중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1983년 12월 군복무 중이던 서울대생 한희철은 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고 학생운동 조직과 입대전 과거활동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다. 한희철은 보안사의 가혹행위에 의해 민주화운동 동료들을 거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속에 자살하였다.

군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강제징집된 후 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병사들의 죽음을 복무에 염증을 느낀 단순 자살이라고 발표하였다. 소속부대와 헌병대, 그리고 보안부대 모두 녹화

사업, 보안사의 고문, 프락치활동 강요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숨김으로써 이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밝혀지지 못해 의혹 투성이의 의문사가 되었던 것이다.

다. 군대의 과도한 폐쇄성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뿐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군부대 운영의 과도한 폐쇄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수많은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시기 군부대는 공식적인 규정, 지침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부당한 폭력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구타와 기함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빈번하였고,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부대운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타살 또는 사고사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해당 지휘관들은 처벌과 진급 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결국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상명하복이라는 군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망사건의 진상이 비교적 손쉽게 은폐, 조작됨으로써 많은 사건들이 의문사로 남게 되었다. 이런 군내 사망사건은 당연히 의혹이 증폭되었고 그러한 의혹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은폐조작이라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허원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4년 4월 허원근일병은 술에 취한 하사관이 쏜 총탄이

가슴을 관통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18년 동안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음주가 금지된 전방 GOP내에서 일부 간부들이 술자리를 벌이던 중, 중대장과 다투다 내무반으로 달려 나와 행패를 부리던 하사관이 발사한 총탄이 허원근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하였는데, 사건이 바로 보고되기는 커녕 시신이 내무반 밖으로 옮겨져 다시 2발의 총탄이 더 발사된 후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조작 발표되었다.

임용준, 남현진 등은 입대전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경력 때문에 더욱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된 경우이다. 위원회의 조사개시 당시 이 두 사건은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사건 발생 초기에 구타 등의 사실이 은폐되었고 헌병대 수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의문사사건중에는 애초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었음에도 사건경위가 은폐되거나 조작됨으로써, 의혹이 증폭되어 의문사가 된 경우도 많았다. 즉 사고의 발생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이나 실수 등을 숨기기 위해 조작되고 헌병대의 수사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 결과 유가족들은 군당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문사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라.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전향공작

의문사 사건은 그 특성 상 주로 정보 수사기관, 군부대 등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특수한 조건 중 하나가 교도소나 보안감호소 등의 교정시설이다.

1970년대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을 가하는 전향공작이 실시되었다. 전향공작은 심지어 일반죄수까지 동원하여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극단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그 결과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전교도소에서는 1973년 8월 전향담당 공작반이 구성되었으며 이 공작반이 일반수형자들 중 일부를 동원하여 장기수들을 지속적으로 구타, 고문하면서 전향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극심한 폭력이 매일같이 계속되던 끝에 수용자 최석기는 1974년 4월 사망하였는데 교도소 당국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1974년 7월에는 비전향장기수 박용서가 바늘로 전신을 찌르면서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을 참지 못하고, '전향공작 강요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역시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6년 대구교도소에서도 극심한 고문과 함께 전향공작이 진행되었다. 비전향장기수 손윤규 등은 이러한 전향공작에 단식으로 항의하였고, 교도소측은 단식 중인 장기수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고무호스로 강제급식을 실시하였는데, 손윤규는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에 따라 많은 장기수들은 단지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기를 채우고도 사법적 절차 없이 수형생활을 계속하여야 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김용성·변형만 등 보안감호수용자들은 보안감호의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보안감호소측은 단식 중인 수용자들에게 강제급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용성과 변형만 두 수용자가 쇼크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 모든 사건들이 발생당시에는 대개 자살이나 병사로 조작 발표되어 결국 의문사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국가공권력의 폭력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었다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살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남민전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문은 1981년 8월 경부터 위장병이 악화되어 진단 결과 수술과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교정당국이 이재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마. 삼청교육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가 바로 삼청교육대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사회악 일소'라는 명목으로 소위 <삼청계획>을 수립, 1981년 1월까지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식 재판도 없이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강제노동과 폭력을 통하여 소위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청

교육대 수용자들은 기본권이 무참히 침해당했고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되었던 전정배는 1981년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까지 받아 1981년 5월부터 삼청교육대 감호분소에 수용되었다. 1981년 6월 20일 경비부대 장교들에 의한 감호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삼청교육대 감호생들은 감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 회부, 처우개선, 사회복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비부대가 이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열의 맨 앞에 있던 전정배는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한편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였다가 역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박영두는 1981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이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당한 박영두는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처우개선과 감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투쟁에 참가하였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1984년 10월 12일 교도소 지하실에서 2시간 이상 수차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박영두는 그날 저녁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교도소와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은 박영두의 죽음을 심장마비에 의한 것으로 은폐조작하였다.

바. 무리한 공무집행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사·교정활동 이외의 공무집행과정에서도 필요 이상의 강경한 수단이 동원됨으로써 의문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1995년 인천 아암도에서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항의 농성 중 사망한 이덕인의 경우, 당시 연수구청과 인천경찰서가 용역전문업체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과잉 진압하자, 농성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사. 사적 폭력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묵인 및 방조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연한 폭력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의문사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노동3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침해를 막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도덕한 일부 사업주나 학교재단들은 행정당국,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나아가 정치권과 연계를 맺고 수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는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학내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가 의문사를 낳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찰력을 직접 투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구사대 활용이

권장되기까지 하였다. 1988년 광무택시에 근무하던 문용섭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 회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자 출신 구사대를 고용하였으며 구사대가 문용섭을 폭행, 결국 사망하였다.

만약 당시 관계당국에서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구사대에 의한 문용섭의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회사측의 폭행사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단순한 치사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용섭은 공권력의 방임 하에서 회사측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이며, 그 진상 또한 공권력 개입 하에 무시된 것이었다

노사간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원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공권력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재단측의 비리를 옹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학생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1996년 대구공업전문대학생 박동학은 학원비리와 학생운동 탄압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교육행정당국이 사학재단의 학원비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운동 전반을 친북좌경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학재단들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활동권리마저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과정에서 박동학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아. 변사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의문사 사건에는 변사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종자로 남게 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지 못하고 의문사 사건이 된 경우도 있었다.

문영수는 1982년 광주에서 폭력사건의 피의자로 연행되었다가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사망과정에 경찰관의 폭력이 직접 개입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문영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행려병자로 처리하여 시신이 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운동가 박태순은 1992년 시흥역 구내에서 열차사고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태순의 죽음은 연고가 없는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지문확인 등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박태순사건은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의문의 실종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자.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

공권력의 개입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극도의 불신으로 인하여 권력의 음모나 정보기구의 개입 의혹이 팽배해 지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사건은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사건들의 유가족들이 공권력의 개입을 의심하게 된 것은 사건처리나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부도덕하고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이야말로 의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의혹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위원회의 조사는 공권력 개입을 확인한 사례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한 의혹을 풀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상규명 결과

□ 진정 제1호 양상석 사건

인적 사항	◦ 1923년 8월 16일생, 정당인(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
사건 개요	◦ 1971년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같은 해 4월 27일 집에서 나간 후 30일 17:00경 금산읍 양지리 뒷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금산경찰서는 지구당내 심한 갈등과 중앙당의 공천교체 움직임으로 인한 좌절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면도칼로 배를 갈라 할복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상석은 1961년부터 사망시까지 신민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금산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며 3선개헌 반대 및 야당 대통령 선거후보 지원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금산경찰서에서 야당 당원들을 감시 하였고, 중앙정보부 요원과 보안사 직원도 상주해 있었다. ◦ 경찰은 양상석의 3일간의 행방불명 행적 등 주변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하루만에 회신된 필적감정결과, 부검소견, 몇몇 참고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3일만에 사인을 자살로 단정짓고 신속히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복부상처를 자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견해, 사체 발견 현장에서 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해 중 암벽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복부 이외에 사체의 손상이 너무 경하다는 점, 대통령선거일 이전까지 공천교체 등의 문제로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자타살을 확정하기는 어려웠다. ◦ 32년이 지난 사건이라 사건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기록들이 모두 폐기되었고, 참고인들도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생존해 있는 참고인들은 노환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보존문서인 '사건검시부'가 분실되어 양상석의 사건 지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국가정보원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양상석에 대한 존안자료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진정 제2호 임용준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4월 21일생, 군인(일병), 연세대 심리학과 휴학
사건 개요	◦ 임용준은 1981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한 후 연세방송국 취재기자로 활동하다 1984년 4월 18일 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단 포병대대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2일 17:45경 M16 소총으로 총탄 한 발을 목 부위에 발사, 관통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군단 헌병대에서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총기 자살한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헌병대 수사기록은 보존 연한(7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에 보관 중인 총기감정의뢰서 및 결과, 사망확인증, 사체검안서와 당시 헌병속보 보고서를 확보하였고, 당시 포대원들을 조사하였다. ◦ 임용준은 대학 방송국 취재기자로 활동하던 중 1981년 11월 교내시위 때 서대문경찰서에 연행, 훈방 조치된 뒤 경찰의 특별관리대상과 순화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리되었다. ◦ 1984년 가족과 기관원들의 중용에 의해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에 입대하였다. ◦ 임용준은 ○○군단 포병대대에서 체격이 왜소하고 체력이 뒤떨어져 고문관 취급을 받으며 거의 매일 고참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는 자살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임용준이 사망 이후인 1986년에도 관리된 이유와 보안부대의 임용준 관찰 여부는 기무사령부의 자료 비협조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 사체검안서(경부관통총상)와 헌병 속보(두부관통총상)가 각각 다른 이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공초소 근무자를 지정하여 총기와 피복을 감정의뢰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 임용준이 상습적인 구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간과한 채 가정문제 비판자살로 처리하여 의문사로 남게 되었다.

□ 진정 제3호 신호수 사건

인적 사항	◦ 1963년 8월 6일생, 인천 연안가스 배달원
사건 개요	◦ 1986년 6월 11일 13:30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로 연행된 후 실종되어, 같은 달 19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대미산 중턱의 바위굴 속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여수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자신의 옷으로 줄을 만들어 자살하였다고 내사종결하였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경찰관 3명이 6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신호수를 연행하였으나 18:00경 석방하여 범죄혐의가 없었다. 다음날 07:00경 신호수가 숙소에서 나갔으며, '의사'로 인한 자살이라고 1986년 8월 21일 내사종결하였다.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신호수의 부친이 1991년 4월 12일 제출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상해치사, 독직폭행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6월 14일 혐의가 없다며 공소부제기 처분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신호수는 방위복무 중에 습득한 불온선전물 수집 장을 집에 보관하였는데, 1985년 9월경 새로 이사온 주민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는 '장홍공작'이라는 공작명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 수사를 담당한 차○○는 조사후 훈방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간상 임의동행보고서, 진술조서 등 5종 24장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찰관들의 진술이 있다. ◦ 차○○의 조사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다른 장소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조사했을 가능성 있다. ◦ 연행된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나갔다는 과거 참고인의 진술은 직접 목격하지 않고 문소리만 들었다 하므로 믿기 어렵다. ◦ 가매장한 사체를 20일이 지나 부검한 후 '의사'로 결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에 의하면 매장할 경우 입관시 경부가 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경부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당시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공작수사의 문제 등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를 위한 특진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 진정 제4호 이이동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4월 13일생, 군인(이병),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휴학
사건 개요	◦ 1987년 1월 10일 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수사 경비중대에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월 15일 중대 막사 서북면 산 능선에서 머리관통 총상을 입고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고 당일 13:00경 충정교육을 위해 집합했을 때 이이동이 참석하지 않아 중대장의 지시로 전 중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14:10경 부대 뒷산에서 총소리가 나서 부대원이 달려가 보니 이이동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사망해 있었는데, 가정문제를 비판하여 개인소지 M16 소총을 총탄 상자 위에 올려놓고 두부에 총격을 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총기는 총탄상자 위에 없었고, 이이동의 몸과 땅바닥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병대에서 최초 현장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결론내린 것이다. ◦ 이이동이 미군부대 사격장에서 실탄을 습득, 은닉하고 있다가 자살에 사용하였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 실탄 입수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 이이동은 사망하기 한달 전인 1987년 5월 중순 행정반 교육계로서 근무편성작업을 맡은 이후로 근무시간 편성과 관련하여 고참병들에게 시달렸고, 특히 잦은 일차려와 구타가 있었으며, 사고 전날에는 불침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서기도 하였다. 이런 고참병들의 구타 등은 이이동의 자살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이이동이 자살하였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부대내 고참병들의 구타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이이동의 자살 원인을 가정 문제로 왜곡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사과해야 한다.

□ 진정 제5호 김두황 사건

인적 사항	◦ 1960년 6월 23일생, 군인(이병), 고려대학교 재학중 강제징집
사건 개요	◦ 김두황은 육군 ○○사단에서 군 복무 중, 1983년 6월 불상일시 상병 유기필, 일병 김웅걸 등과 불상지점으로 매복근무를 나가 M16 소총 실탄 4발에 의한 총상을 입고 강원도 소재 해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사단 헌병대는 김두황이 평소 특수학적변동자라는 점 때문에 중대장의 감시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등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유서를 소지하고 1983년 6월 18일 19:35경 상병 유○○, 일병 김○○과 매복근무 중 소변을 보러 간다며 나가 매복호에서 23:35경 자신의 총기로 실탄 4발을 연발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김두황은 '고려대 단대간 학회연합체 및 지하조직 81 통일체 연계, 83년 1학기 시위 모의사건(일명 3.7사건)'으로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983년 3월 18일 강제징집되었다. ◦ 위원회는 김두황에 대한 지휘계통과 보안부대를 통한 관찰 및 동향보고가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김두황의 사망 당시 운동권 팜플렛 「아방과 타방」 수사가 광범하게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김두황이 사망 전 '녹화사업' 때문에 보안사령부에 소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 헌병대 수사결과와는 달리 김두황의 사망 시각, 장소 등은 조작 또는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헌병대는 김지하의 시 "끝"을 김두황의 유서라고 단정하였고, 육군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도 잘못되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은 인정)
향후 과제	◦ 김두황의 사망과 '녹화사업'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아방과 타방」 수사자료는 경찰청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다. ◦ 당시 보안사령부과의 심사장교 이○○, 홍○○ 등을 해외 체류와 조사 시한 부족 등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 '녹화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상해야 한다.

□ 진정 제6호 정경식 사건

인적 사항	◦ 1959년 12월 15일생, 노동자(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사건 개요	◦ 정경식은 1987년 5월 노조지부장 선거 관련 문제로 이○○에게 상해를 가하여 고소를 당해 경찰서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8일 행방불명되었다. 유족 등의 진정과 항의에 의해 국회의원 설훈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 활동 중 1987년 12월 14일 천주산 관음사 부근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했으나 정경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 후 1988년 3월 2일 창원공장 인근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창원경찰서는 1988년 3월 29일 이○○과의 폭력사건이 합의가 되지 않자 경찰에 의한 구속을 두려워하여 고민하다가 1987년 6월 8일 불모산에서 비관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마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정경식은 1987년 2월경 회사의 임금동결 선언에 항의하는 중식 거부투쟁에 참여하였으며, 그 해 5월경 노동조합 대의원 및 지부장선거 시기에 민주파 모임에 참석하는 등 민주노조 건설에 참여하였다. ◦ 정경식은 폭행사건 이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등산, 낚시를 다녔고, 경찰의 출석요구서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2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합의결렬시 법원 공탁금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800여 만원 이상을 저금하고 있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유골발견 현장에서 수거한 각종 증거물 중 끈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토양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부패할 때 나오는 유기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동물의 침입흔적이 없음에도 유골이 10m 이상 산개된 점, 출입이 빈번한 장소임에도 9개월 동안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은 자살이란 사인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하지만 더 많은 조사가 요구된다. ◦ 정경식의 실종 당일의 행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최종목격자 2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방산업체인 대우중공업 담당 공안기관원들의 행적조사 및 개입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

인적 사항	◦ 1931년 4월 28일생,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건 개요	◦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1973년 10월 16일 14:00경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 동생 최○○(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출두하여 조사받던 중, 출두 3일만인 19일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1973년 중앙정보부는 최종길이 조사 중 고정간첩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국내 조직망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988년 검찰은 진정사건에 대해 자살이나 타살의 증거도 없고, 간첩여부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분명한 증거없이 최종길에게 간첩 혐의를 두고, 잠 안재우기, 모욕 등의 언어폭력,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질 등 심한 구타, 각목을 무릎에 끼워 발로 밟기 등 상당한 정도의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요구하였다. ◦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검증조서, 수사보고서 등 최종길을 간첩으로 단정하는 일련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다. 서류 중에는 최종길이 허위로 자백한 내용도 있었다. ◦ 현장검증조서도 조작되었다. 남산분청사 7층 사무실에서 1973년 10월 19일 04:30~05:00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하나,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담당검사, 차○○ 등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긴 뒤였다. ◦ 감찰실 조사결과 차○○ 등에 의해 고문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은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 ◦ 중정은 관련도 없는 최종길을 포함, 1973년 10월 25일 '유럽거점대규모간첩단사건'을 발표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최종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고문에 가담한 차○○, 김○○, 변○○과 허위 서류 작성 등에 참여하여 사건을 은폐한 조○○ 등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
향후 과제	◦ 고문 등 국가인권침해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 타살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확정해야 한다.

□ 진정 제8호 신영수 사건

인적 사항	◦ 1961년 4월 9일생, 학생(건국대 건축과 2년)
사건 개요	◦ 1982년 3월 12일 오후 7시경 학과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 앞 막걸리집에서 군에 입대하는 친구 송별회에 참석한 후 23:30경 친구들과 헤어졌다가, 다음날 서울 잠실 근처 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지검 동부지청과 강동경찰서는 신영수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귀가하였고, 사고 당일 택시운전사는 신영수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잠실1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심장 파열로 인한 심낭내 출혈이 사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타살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신영수는 평소 국가고시준비 등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학생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신영수는 사망 당일 같은 과 동료 군입대 송별회에 참석하여 19:00~22:30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 만취상태가 되었다. 신영수는 술자리가 끝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집과는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실 부근에서 하차하여(신영수의 사망 후 잠실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지품을 찾아가라는 엽서가 왔다), 삼성교를 도보로 지나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 택시운전사 김동학 처의 진술 및 강동경찰서장 명의로 작성한 부검의뢰서 기재에 의하면, 신영수가 1982년 3월 12일 23:30경 삼성교 다리 난간에 혼자서 기대고 있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김동학 1992년 사망).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9호 김창수 사건

인적 사항	◦ 1924년 5월 1일생, 상업(선거관리위원)
사건 개요	◦ 김창수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1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용지 1백장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단순 사무착오로 입증되어 투표를 완료하고 개표한 결과 야당인 신민당에게 패하게 되자, 공화당은 부정투표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창수는 서울에 있는 참고인과 대질신문하기 위해서 경찰 2명, 공화당 간부 2명과 함께 야간열차로 상경하던 중 전북 김제역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1차 수사발표 - 자살 ◦ 2차 수사발표 - 실족사 ◦ 3차 수사발표 - 취중 추락사 ◦ 4차 수사발표 - 탈출 추락사
위원회 조사결과	◦ 1971년 4월 27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간신히 이긴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5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강기천을 목포지역 후보로 출마시켜 군, 행정, 수사기관, 폭력조직 등을 총동원하여 지원했으나 신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개표과정에서 불리해지자 공화당원들은 개표를 중단시키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할복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공화당측은 부정선거행위를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 경찰은 김창수를 6월 초순부터 목포시 여관 등지에서 거의 매일 투표용지를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협박 등 강압적 수사를 계속하였다. 김창수는 6월 20일 투표용지 절취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고, 증거보전 차원에서 강제 녹음하였다. ◦ 김창수의 사망원인은 추락이 아닌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상의가 찢겨져 벗겨진 채 발견된 점, 동행한 경찰관이나 공화당 관계자들이 사고 직후 김제역에 찾아와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점, 열차동행인들의 행적과 알리바이가 일치되지 않는 점, 당시 치료했던 의사가 김창수의 상처는 열차사고로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단순 추락사로 보기는 어렵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창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요청)
향후 과제	◦ 기차에서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정 및 타살 계획여부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진정 제10호 이창돈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년 4월 3일생, 군인(일병), 인하대 기계학과 휴학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창돈은 1982년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여 YMCA 내의 자생 서클 '자운영'에 가입, 총무로 활동하다가 1983년 8월 1일 군에 입대하여 12월 8일 육군 ○○사단 수송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4년 5월 14일 소속대 행정반에서 총기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불화, 신상을 비판하여 사고 당일 오후 6시에 상황실 보조 근무를 마친 뒤 동료 근무조와 함께 실탄을 반납하는 사이에 턱에 총을 1발 쏘아 머리가 관통된 채 사망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창돈은 1984년 5월 14일 17:00부터 18:00까지 병장 문○○과 함께 대대 상황실 외초 경계근무를 서다 후반 근무자 중 상병 나○○과 교대 후 혼자 본부포대 행정반으로 복귀, M16 실탄 1발이 목에서 머리 위로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출입문 부근 행정반 안쪽 벽에 기대어 쓰러졌다. 그러나 자살인지 총기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 육군 ○○사단 헌병대 속보에 이창돈이 안기부와 보안대의 관찰요원으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었고, 1983년 1월 15일자 자운영 회보가 문제가 되어 이창돈의 자운영 선배들이 보안사에서 조사받았다. 이창돈이 군 입대 후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보안대가 이창돈을 관찰 또는 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헌병대 수사결과와 달리 이창돈이 행정반에서 사망할 때 행정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무자 중 1명만 교대하고, 주변사관과 주변하사 모두 행정반을 비운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두려워한 대대장이 헌병대와 함께 사건을 조작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무사령부가 이창돈에 대한 동향관찰기록 등을 협조하지 않아 이창돈이 "관찰요원"이었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 경계근무조 운영 등 부대관리를 규정대로 지켜야 한다. 반드시 부검을 실시, 사인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자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비판 등이 발견되면 이것만을 자살사유로 단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 진정 제11호 우수열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년 2월 1일생, 학생(서울대 국어국문학과 4년)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년 6월 28일 20:00경 방학인데도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 같은 달 30일 08:30경 서울 용산1가 17번지 소재 남영역과 용산역 사이의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는 우수열이 서울역 기점 약 2,180m 지점에서 철로에 머리를 베고 자살한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기관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입건하였으나 우수열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한 점을 인정하여 1985년 8월 16일 무혐의 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열이 1981년 고려대 재학기간 및 1982년부터 1985년 6월까지 서울대 재학기간 중에 서클활동이나 각종 시위, 집회 등 학생운동에 참가한 사실은 없었다. 우수열은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해 왔으며, 여자친구에게 가정환경과 고시공부의 어려움, 불합격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우수열은 1985년 6월 28일 흥분된 상태에서 집을 나갔으며, 이후 29일 새벽 4시경 큰누나의 집에 들러 시골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차비를 요구했으며, 같은 날 오전 서울대로 가서 점심시간경 선배를 찾아가 여행경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열이 사망하기 전날인 1985년 6월 29일 새벽에 치안본부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 운동권 관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학생회관 수색작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유가족에게 공권력 개입 가능성의 의문점을 던지는 단초가 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리한 경찰력의 남용을 제한한 필요가 있다.

□ 진정 제12호 이진래 사건

인적 사항	◦ 1959년 2월 17일생, 군인(카투사, 이병), 서울대 제약학과 휴학
사건 개요	◦ 이진래는 1981년 11월 7일 군 입대 후, 카투사 부대에 배속된 지 이틀만인 1982년 1월 2일 목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미육군 범죄수사대(CID)의 사건기록 일부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이진래가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척추디스크 증세 및 서울대 재학 당시 부친 사망 때문에 시험을 못 치르고 성적이 미달되어 집에서 기대한 만큼의 보답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여 향나무가지에 자신의 군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래는 학생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광주의 친척집에 있었지만, 참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평소 체중 52kg을 45kg으로 감량, 신체검사에서 무종 등급을 받았으나, 불시 재점검결과 48.5kg으로 1등급 등급을 받아 1981년 11월 7일 현역으로 입영하였고, 논산훈련소에서 카투사에 선발되어 평택 카투사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원사령부에 배속되었다. ◦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훈련소 및 ○○지원사에서 대기하는 동안 동료들에게 학력 때문에 군 입대하였다면서 허리디스크로 생활하기도 고통스럽고 죽고싶다는 말을 하였다. 사망하기 전날 동료들과 기간병을 찾아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일 새벽 내무반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 이진래의 형은 방첩대 관계자가 노란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진래를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보안부대 담당자가 사망하였으며 다른 보안부대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보안부대의 당시 운동권 사병 관련 카드 작성과 이진래에 대한 기록 관리 여부, 미군 헌병병장의 사체에 관한 진술 내용, 국군중앙의무시험소 군의관 및 의무병의 사체검안서 대필 관계, 학생운동가담 및 서클활동관계와 광주민주화운동참여 여부, 사고사 위장관계 등은 시일이 촉박하여 확인치 못하였다.

□ 진정 제13호 장종훈 사건

인적 사항	◦ 1963년 4월 5일생, 학생(경희대 행정학과 4년)
사건 개요	◦ 해뜰야학에서 활동하던 중 1989년 3월 26일 동료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길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같은 달 31일 07:40경 병원에서 연수마비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중랑경찰서는 장종훈이 보행 중 대형차량에 의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기소중지 의견과 함께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같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종훈은 1987년 2~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서울동부지역 노회 총무로 활동하며 "양심수 석방, 군부독재 타도, 민중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사발 단식까지 하면서 사회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사망 전까지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 장종훈은 '두란노 야학'('해뜰 야학')에서 1987년 1년 동안 노동자 고입검정고시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야학 교무 일을 맡아보았다. 1988년 3월 이후로도 야학 월례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동료들과 태능경찰서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감시나 미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대학 선배인 조○○과 함께 수배를 받았다고 하나 중로경찰서 범죄경력 조회자료와 조혁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었다. ◦ 목격자와 부검의의 진술을 볼 때, 장종훈은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다 먼저 나와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뺑소니 교통사고 보상금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사망전의 민주화운동은 인정)
향후 과제	◦ 장종훈은 80년대 민주화운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

인적 사항	◦ 1915년 8월 27일생, 언론인 · 재야정치인
사건 개요	◦ 등산회원 40여 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약사봉 계곡 옆 산을 일행들과 떨어져 등산하던 중, 12m 벼랑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서○○은 장준하가 김○○과 함께 약사봉 정상에 올라간 후 하산하다 실족 추락 후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준하는 1973년 11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1973년 12월 13일부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1월 8일 개헌운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헌청원 운동을 계속하여 1월 13일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 지병인 협심증으로 12월 4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 중앙정보부는 1975년 2월 21일 장준하가 자택에서 개헌운동 촉구하는 등의 반유신 활동을 계속하자 일거수 일투족을 미행하고 도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 사체를 제일 먼저 목격한 김○○은 여러 차례 실지조사에서 장준하가 군인과 커피를 나눠 마신 장소, 장준하와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는 장소, 산행경로, 추락지점에 이르는 경로, 추락 당시 상황이나 사체 발견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 사체는 귀 뒤쪽 두개골 함몰골절상 외 다른 골절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신의 모습이 깨끗하였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보아 75m 높이에서 실족 추락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막내아들 장호준은 12:00~13:00경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장준하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장남은 장녀로부터 14:00~15:00경에 13:00경 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김○○이 사설정보원이라는 중정 요원의 진술을 조사기한 만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중정 요원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된 경위, 중정의 사망사실 인지 경위, 현장에 파견된 요원의 신원, 그의 활동 상황은 자료 미비, 조사시한 만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 진정 제15호 박헌강 사건

인적 사항	◦ 1956년 5월 20일생, 무직
사건 개요	◦ 1982년 5월 16일 전기시설기사 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려 나간 후 다음 날 17일 경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0일 06:00경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대전경찰서 수사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고,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을 찾지 못하여 사건 당시의 수사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 진정인이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와대에 사건 재수사를 진정한 바 있으나, 박헌강이 타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982년 11월 12일부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헌강은 대학졸업 후 교원임용 발령을 기다리면서 전기시설기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여 사고 전날인 1982년 5월 16일 낮 12시까지 자격시험을 치렀다. 그 후 곧바로 친구들과 저녁 무렵까지 계속 술을 마셨으며, 18:00~19:00경 헤어졌다. 이 시간 이후 다음 날 새벽 골목길에서 발견되기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박헌강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찰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 추적,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1982년 5월 21일 사체를 부검한 결과 머리 부분에 외상 흔적은 없지만 두개골 두 곳이 깨져 안에서 피가 나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갈비뼈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 사망 경위로 교통사고, 실족사, 폭행사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 경위는 밝힐 수 없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사건 당시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까닭에 유족이 박헌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 진정 제16호 황 선 철 사건(각하)

인적 사항	◦ 1965년 3월 26일생, 전투경찰
사건 개요	◦ 부산산업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전경중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유기인으로 만든 농업용 살충제인 메타시톡스 중독에 의해 1987년 1월 24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경계호에서 농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하였고, 변사체에 살충제 특유의 냄새가 날 뿐 외상은 없고 타살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각하
결정 및 후속조치	
향후 과제	

□ 진정 제17호 송종호 사건

인적 사항	◦ 1968년 9월 8일생, 군인(일병),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2년 휴학
사건 개요	◦ 송종호는 ○○사단 포병연대에서 사격 지휘 계산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1991년 2월 20일 부대 동계훈련 중 사격지휘차량 내 사격지휘도판과 차량 벽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인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송종호가 사격지휘도판을 들어 올리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도판과 차량 벽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여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종호는 부대동계훈련 중이던 1991년 2월 20일 02:00~03:00 사격지휘차량에서 야간근무 중이었다. 야간 근무 중 정위치는 차량 내 도판받침대 안쪽의 3인용 의자였으나, 이 의자에 일병 김○○이 자고 있었고 도판받침대 위에서는 병장 고○○이 자고 있었으므로, 송종호는 도판받침대 바깥 쪽 의자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도판받침대는 경첩으로 연결되어 출입할 때 이를 들고 드나들게 되어있었던 바, 부득이한 이유로 도판 받침대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던 송종호는 그 위에서 자고 있던 고○○ 병장을 깨우지 않기 위해 도판 받침대를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목 부분까지 들어 받치고 옆걸음으로 지나가던 중 병장의 어떤 행동행위로 들고 있던 출입문을 놓치게 되었고, 떨어진 도판받침대가 송종호의 목 부분에 끼이게 되면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시○○ 소위와 작전과장 이○○ 소령이 03:00 이후 송종호를 발견하고 도판 받침대에서 빼내어 소생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이후였다. ◦ 대대장 최○○은 작전과장 이○○, 시○○, 고○○ 등에게 사건 당일 고○○이 규정을 어기고 사격지휘도판 위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유가족들이 군수사결과의 사인을 납득할수 있도록 수사초기에 사실 은폐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진정 제18호 박태순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6년 9월 12일생, 노동자(한신대 철학과 2년 중퇴)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8월 29일 부천시 역곡동 '수영기계'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동 친형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구로역 인근에서 행방 불명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방불명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남부경찰서에 보관중인 변사자의 지문 대조를 통해 1992년 8월 29일 21:55경 시흥전철역 경부선 하행선 서울기점 17.1km 지점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신원불상의 사고자가 박태순임을 확인하였다. 화장되어 벽제 무연고묘지에 있던 유골은 유가족들이 인수하였다. 박태순은 1985년 대학 입학 후 독재정권 퇴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공안합수부 해체,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 등의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휴학 중에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였다. 기무사는 1991~92년 군내 좌경 전력자에 대한 동향관찰 등 일명 '마파람사업'을 실시하면서, 박태순의 대학동기이자 1989년 5월 20일 '수원지점 점거농성사건'에 함께 참여하였던 이○○이 1991년 4월 육군 ○○사단에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자, 그를 A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변인물이었던 박태순에 대한 미행·감시 등 내사활동을 하였다. 서울지구 기무부대 방첩과 소속 중사 추○○과 군무원 이○○ 등은 1991년 8월 15일 박태순 등 수원지역 노동운동가들의 MT현장을 탐문하였고, 10~11월 수원경찰서 대공과, 경기지방경찰청 공안분실 등을 방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대일화학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를 방문, 박태순과 주변인물을 내사하였다. 이○○는 추○○이 1992년 2월 "전에 우리가 내사하였던 박태순이 전철역에서 죽었다"고 말했으며, '수영기계'에 들러 "여기가 박태순이 근무한 공장이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추○○은 그 사실을 부인했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파람사업' 관련 자료 확보 기무사 등 공안기관의 박태순 관련 자료 확보 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한 기록 관리 체계화 및 신원확인 철저

□ 진정 제19호 이철규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년 5월 6일생, 학생(조선대학교 공과대학 4년)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5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철규는 후배 생일 축하모임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광주 북구 청옥동 소재 제4수원지 부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받고 도주한 후 5월 10일 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철규가 경찰의 눈을 피해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로 잠입한 후 더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려고 수원지 내의 물가를 따라 이동하던 중 청암교 석축 다리 하단을 지나다 미끄러져 수원지에 추락, 익사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철규는 1985년 반외세반독재투쟁위원회 결성 혐의로 구속되었고 1987년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대학교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이 되어 1989년 전남지역 공안합수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었다. 1989년 5월 3일 이철규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검문을 받고 제4수원지 도로변 산으로 도주하였으며, 형사들은 이철규를 검거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철규가 5월 3일 청암교 다리 아래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위속에 내용물이 식후 2시간 정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5월 3일 검문 2시간 이전에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의학 소견도 있으므로 익사라 단정할 수 없다. 1989년 5월 3일 검문현장 및 산속 도주로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승용차와 제3의 인물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공안기관에 의한 이철규의 검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철규의 행적에서 밝혀지지 않은 시간대의 규명 (1998.5.3) 국가정보원의 자료 비협조로 민주조선 사건에 대한 안기부 광주지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어려웠다.

□ 진정 제20호 이내창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5월 11일생,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건 개요	◦ 1989년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8월 14일 신원 미상의 남녀 2명이 방문하여 행방불명된 후 8월 15일 19:00경 거문도 유립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여수경찰서는 이내창이 부담되는 학생회 업무를 접어두고 휴양차 거문도로 내려가 유립해수욕장 근처 바위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실족,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내창은 1986년 중앙대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동아리 '민족미술연구회'를 창립하고, 청년미술공동체 모임을 준비하는 등 민족미술운동 관련 활동을 이끌었으며, 1989년에는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안기부는 1989년 7월 1일 임수경의 방북과 민미련의 민족해방운동사 결계그림 슬라이드 반출사건에 대해 간첩 혐의로 내사 공작하였다. 인천분실 대공수사과 팀장인 김○○이 이내창도 내사공작하였을 것이라는 진술, 민미련 학생대표 전○○ 등이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내창을 안기부가 내사 공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1989년 8월 15일 08:00 여수발 거문도행 승선신고서에 이내창과 도○○, 백○○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된 점, 덕성호 선장이○○가 두 사람을 지목하여 경찰이 임검한 사실, 선실 내에서 이내창을 3명의 남자가 감시했다는 진술 등은 기관원이나 망원들이 함께 승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내창은 8월 15일 15:00경 다방에서 일하던 최○○이증언에 의하면 여자 1명과 콜라 등을 마신 후 남녀 2명과 함께 여객선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고, 8월 15일 15:30경 남녀 2명과 함께 덕성호를 타고 유립해수욕장 초입에 내렸다. ◦ 변사체 발견시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고, 머리의 상처 등이 암벽 등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외력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으며, 경찰이 지적한 실족 예상지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실족하기 어렵고 실족하였더라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어 자살이라는 결론은 믿기 어렵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8월 15일 전후하여 거문도에 체류한 서울시경 및 대전시경 경찰관으로 자칭하는 기관원 수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 국가안전기획부의 내사 관련 자료 확보해야 한다.

□ 진정 제21호 박창수 사건

인적 사항	◦ 1960년 7월 28일생,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개요	◦ 1991년 2월 10일경 대우조선 노조쟁의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부상을 입고 안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5월 6일 04:45경 안양병원 1층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수원지검은 박창수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끼던 중 검진결과 경상으로 밝혀져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결정되자 순간적 충동으로 병원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창수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전노협과 대기업연대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관계당국은 대기업연대회의를 주목하다가 1991년 2월 10일 박창수 등을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다. ◦ 안기부 부산지부 홍○○는 한진노조의 전노협과 대기업 연대회의 탈퇴를 추진해오다가, 박창수 구속 이후 노조측 관계자들에게 조기석방의 전제라며 탈퇴선언을 종용하였다. ◦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창수는 1991년 5월 4일 운동장에서 자해를 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5월 5일 노조 간부인 장○○을 통해 홍○○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전노협 탈퇴문제로 고민하였다. ◦ 박창수는 1991년 5월 6일 04:40경 병실을 나갔고 04:45경 1층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법의학 감정에서는 선 자세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견해와 교묘한 구타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견해가 같이 제기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자타살의 가능성이 엇갈리므로, 박창수가 투신자살하였을 가능성과 공권력 개입의 가능성 모두 배제하기 힘들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창수의 사망 이후 경찰이 영안실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므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 국가정보원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홍○○진술조서 등을 조사마감에 임박하여 보내는 등 비협조에 애로가 있었다. ◦ 정보기관 등이 노동운동에 대한 불법적 사찰 및 공작에 대한 금지책이 필요가 있다.

□ 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

인적 사항	◦ 1970년 1월 10일생, 한총련 투쟁국장
사건 개요	◦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은신 중, 9월 15일 전남도경 형사기동대의 검거를 피하다가 경찰검거작전 중 광주 소재 아파트 화단 앞에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97년 9월 15일 ○○아파트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25명은 23:00경 도착한 후 1시간 가량 잠복 근무하다 검거에 나섰고, 김준배는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와이어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4층 높이에 서 추락, 화단으로 떨어졌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후송, 응급치료하였으나, 16일 00:33경 추락에 의한 간우엽 손상 및 과다 출혈 사망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장 도○○는 경사 특진을 위해 김준배의 주변인물을 프락치로 고용, 1,500만원 상당의 금액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에 후배 전○○는 자신의 집으로 김준배를 유인하였고, 정○○검사는 전○○의 프락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인은닉죄로 구속하는등 법원을 기망한 직권남용 행위도 있었다. ◦ 경비실 부근에 있던 순경 이○○은 화단에 떨어진 김준배를 발견하고 "여기 있다"고 외치면서 넘어져 있는 김준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고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가격하였다. ◦ 경찰은 구타장면 목격자와 119 신고자를 확인하고서도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 경찰은 현장검증에서 김준배가 케이블선을 잡고 3층까지 내려온 흔적을 발견하고도 이를 허위 기재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준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이○○에 대하여 독직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한 개정 내지 폐지(대체입법 포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 ◦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 자체의 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조사에 불응한 검사 정○○에게 과태료를 부과.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보법 수배자를 포함 시국·공안사범에 검거에 특별진급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아들사망의 충격으로 불면증과 심장질환이 발생한 김준배 부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 진정 제23호 이덕인 사건

인적 사항	◦ 1967년 12월 14일생, 노점상
사건 개요	◦ 이덕인은 1995년 7월 3일부터 인천에서 노점상을 하던중 같은 해 11월 24일 인천시 연수구가 철거용역회사와 경찰 등 1,250명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자 이에 저항하여 30여 명과 함께 망루농성을 하였다. 다음 날 21:00경 탈출을 시도한 뒤 행방불명되었던 이덕인은 11월 28일 10:30경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밧줄이 양팔에 감겨진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인천남부경찰서는 이덕인이 망루를 이탈하여 연안부두 쪽으로 수영하여 가던 중 바다 위에 떠있던 PP로프 줄에 양팔이 엉키면서 힘에 부쳐 익사하였고, 부검 결과 외상이 없고 타살 혐의 점 없다고 판단하여 1996년 2월 16일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덕인은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아암도 지부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굴업도해폐기장 건설반대투쟁 및 8.15민족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아암도 노점상철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 노점상 철거는 1995년 11월 24일 07:15경 시작되었으며, 노점상들은 거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망루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포장마차 철거 후 1995년 11월 28일까지 병력을 망루 주변에 배치하여 24시간 감시하였고, 망루 농성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빨리 내려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과 의약품 공급을 차단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 경찰은 사체 부검하기 위해 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나 1995년 11월 29일 04:49경 영안실에 진입한 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사체를 확보하고, 부검동의서를 받기 전에 부검을 시작하였다. ◦ 이덕인 사건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공권력 동원과 통제는 헌법상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큰 행정권의 발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이덕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행정기관의 노점상 정책과 철거에 동원되는 용역반들의 실태를 세밀하고 폭넓게 조사하지 못했다.

□ 진정 제24호 우종원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5월 5일생, 학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4년)
사건 개요	◦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로 수배를 받고 은신 중, 1985년 10월 12일 경부선 하행 황간역 부근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충북 영동경찰서는 운동권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정문제를 비판하여 수원발 동대구행 통일호 열차에서 추락, 두개골 파열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종원은 1983년 11월 집시법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84년 5월 1일 교황방문 특사로 석방되었고, 이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산하 홍보위원회에서 학외유인물책으로 활동하면서 전두환정권의 독재통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시위현장에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 우종원은 1985년 1월 중순경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민주위 활동을 중단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던 중 같은 해 8월 21일경 민주위 사건 관련자로 수배되어 인천 부평에 자취방을 마련하고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10월 9일 선배 송호진을 만난 이후부터 변사체로 발견되는 12일 10:35경까지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다. ◦ 영동포경찰서는 검거전담반을 구성 우종원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하였다. 대구 서부경찰서에서도 우종원의 대구 집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그러나 우종원이 이러한 경찰의 수사 활동에 의하여 검거되었는지 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다. ◦ 민주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주도하였는데, 주요 가담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 우종원의 사체와 함께 발견된 메모지에 기재된 유서와 비슷한 내용의 글은 우종원의 필적으로 밝혀졌으나 우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놓은 필적은 판별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우종원의 화장이 끝난 다음날인 10월 14일자 안기부 제1국 작성 보고서에는 화장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안기부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어느 시점부터 안기부가 개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대구지역 경찰의 활동내용 및 우종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

인적 사항	◦ 1968년 4월 15일생, 학생(서울대 지리학과 1년)
사건 개요	◦ 1986년 6월 18일 10:00경 서울 자취집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던 중 어떤 남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나간 후 실종, 같은 달 21일 부산 송도 부근 매립공사현장 방파제 앞 바다에서 시멘트 덩이를 매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부산서부경찰서와 부산지방검찰청은 김성수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운동권과 자신과의 부조화 및 성적비관으로 자살하였고, 사인은 부검 결과 익사로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수는 대학에 입학한 후 운동권 동아리인 총연극회와 철학인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학내외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였으며, 유인물 소지 등으로 2차례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다. ◦ 1968년 6월 20일 11:00경 해녀 김○○이 김성수의 시체를 발견하였으나 시체를 꺼내라고 할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일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전날에는 보지 못하였다. ◦ 1986년 6월 21일 다이빙을 하던 최○○가 시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어두워져서 6월 22일 아침에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3~5개의 콘크리트가 매달려 있었다.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은 사체정황이 이상하였지만 공안정국의 분위기에서 의욕을 갖고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 최초 단순익사로 감정했던 김성수 사체 부검의사는 재감정을 통하여 직접사인은 익사이나 간접사인은 뇌손상으로 가사(혼수)상태에서 물에 들어가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사망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김성수의 상의에 나타난 뒷덜미 등의 손자국과 등허리 부위의 손바닥 자국은 잠바 뒷부분을 잡은 채 끌고와 이마를 가격한 후 물에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제1지역장인 이○○는 1986년 6월경 도피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경찰은 이○○의 친척이 거주하는 송도 부근에 20회 이상 찾아왔다. 이○○와 김성수의 연관성, 이○○를 추적한 기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1986년 4월 28일 분신한 이재호가 입원중이던 병원에 김성수가 20일쯤 지나 이불과 옷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이재호와의 관계 등 당시의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 진정 제26호 문용섭 사건

인적 사항	◦ 1941년 10월 28일생, 노동자(광무택시 운전자)
사건 개요	◦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1966년 6월 6일 포장마차에서 회사 관리부장의 사주를 받은 구사대 신세일 등에게서 협박을 받다가 신세일의 폭력에 의해 실신하여 동부제일병원에 입원, 치료받던 중 같은 달 9일 20:15경 뇌좌상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북부지청 명○○검사는 신○○을 단순폭행 및 과실치사로 기소, 1988년 9월 22일 북부지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6월 6일 15:00경 문용섭은 다른 회사의 택시조합원들이 총파업하는데 우리만 일할 수는 없다면서 배차를 담당하던 노○○에게 1,000원을 입금시킨 후 운행을 나가지 않았다. ◦ 노조위원장과 포장마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문용섭에게 노○○관리부장이 와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은 구사대원 정경에게 전화를 걸어 문용섭이 포장마차에서 회사를 비난하면서 떠들고 있으니 손좀 봐주라고 하여 정○○과 신○○이 포장마차로 가게 되었다. ◦ 신○○은 문용섭을 담뱃불로 지지고, 일어나는 문용섭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포장마차 문턱에 걸려 바깥으로 넘어지면서 보도블록 경계석에 뒷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게 하였다. ◦ 신○○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담당검사 명○○이 회사측의 폭행사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광무택시는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노동당국은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의 위법한 행위가 벌어질 수 있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용섭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당시 수사지휘를 하였던 명동성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동행명령장의 발부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향후 과제	◦ 문용섭의 처와 자녀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문용섭의 처는 현재까지 사건후유증으로 파칸슨씨병, 정신질환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진정 제27호 문승필 사건

인적 사항	◦ 1973년 4월 15일생, 학생(전남대 화학공학과 3년)
사건 개요	◦ 1990년 전남대 입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1년 8월 시위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1992년 10월 14일 하교 후 동료들과 모임을 가진 후 다음 날 00:55경 경전선 광주역 농장다리 부근 철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광주 동부경찰서는 문승필이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 자살한 것으로 기관사 공○○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승필은 1990년 6월 '그레그 체포결사대 미문화원 진격투쟁' 중 연행된 후 훈방되었고, 1991년 6월 15일 '폭력만행 민생파탄 주범 노태우 정권 퇴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후 도청 앞 시위 도중 연행·구속되어 8월 25일 출소하였다. ◦ 문승필이 사망하기 전 몇 달 사이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같은 동아리 선배 상당수는 중부지역당사건, 인공기계양사건과 관련하여 수배 중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 문승필은 철로변 나무 밑에서 곧바로 선로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문승필이 선로 안으로 뛰어든 것이 누구에 의해 쫓기다가 피신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순전히 자의로 뛰어든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북부경찰서, 전남지방경찰청의 1992년 생산 자료 일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공안기관으로부터의 감시, 간섭, 협박, 프락치 강요 등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사고 당시의 목격자를 찾아 사망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 사망 19일만에 신원확인이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 진정 제28호 정법영 사건

인적 사항	◦ 1960년 6월 20일생, 학생(청주 신학대 2년)
사건 개요	◦ 1978년 3월경부터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청주지역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150여 일 동안 농성을 하던 중 7월 5일 돌연 약물중독으로 입원, 같은 달 8일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수사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법영의 부친 정진동은 1972년경부터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을 하였는데, 청주시청 청소부들의 퇴직금 인정, 4·19 시국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청주경찰서 정보3계에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전담하였고, 정진동 전담형사가 지정되어 동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에는 일대일감시를 하였다. ◦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1978년 3월 17일경부터 신홍제분 퇴직금미지급 문제, 조광피혁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정법영은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면서 정진동의 활동을 도왔으며, 농성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안기관의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 일부 형사들은 정법영에게 접근하여 정진동의 정보를 확보하려고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법영은 만18세의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농성이 진행 중이던 1978년 6월 25일경 만취하여 귀가한 이후부터 심각한 정신적 혼란 속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에 대한 계속된 감시와 탄압, 아버지의 일을 잘 돕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책감 등으로 인하여 괴로워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정법영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 정진동 목사에 대한 존안카드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국정원은 관련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국정원 충북지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하였다.

□ 진정 제29호 김상원 사건

인적 사항	◦ 1953년 5월 17일생, 노동자(도장공)
사건 개요	◦ 1986년 3월 10일 영등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근무 이○○ 경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서울시립 영등포병원에 행려병자로 입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26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지검 남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결과 대법원은 김상원이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 경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986년 5월 26일 서울시립 영등포병원에서 화농성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직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파출소 경찰관 정○○에게도 위증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상원이 도시산업선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1986년 3월 10일 영등포 일대에서 있었던 근로자의 날 시위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1986년 3월 10일 21:50경 영등포 부근에서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이○○경장의 검문에 반항하여 파출소로 강제연행되었다. ◦ 김상원이 영등포시립병원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주취 상태에서 코피를 흘린 흔적이 있고, 왼쪽 눈꺼풀이 몹시 부어 있었으며, 이마에 무엇인가 부딪친 흔적이 있고, 오른쪽 귀에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치아 6대가 부러진 사실이 발견되었다. ◦ 사건 당일 다수의 경찰관이 해당 파출소에 근무한 사실, 강○○, 황○○이 업무일지를 조작한 사실, 강○○, 김○○, 정○○ 등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맞추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병호 외에 다른 경찰관들도 폭행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폭행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으나, 관련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목격자 등 참고인이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위법한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에 의한 사망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폭행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던 유족들에게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